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9월 1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강승수, 권기만, 김근아, 손홍섭
안주찬, 허 복, 정하영, 안장환, 윤종호 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10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진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근거 마련(안 제4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9조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“월 5만원” 지급 하던 것을 “월 7만원”으로 “월 2만원” 증액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대한민국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,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인근 김천시의 경우 월 8만원, 군위군은 월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시의 경우 증액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